

대 법 원
제 3 부
판 결

2012. 4. 26. 원본영수	인
2012. . . 판결송달	

사 건 2012다15435 신분보장받을 권리확인 청구의 소
원고(재심원고), 상고인

임그루

경북 울진군 울진읍 읍내리 596-3 다세대주택 에이동 103호

피고(재심피고), 피상고인

케이티 노동조합

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06

대표자 위원장 김구현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탐(담당변호사 박정익, 조영선, 이승연)

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2. 1. 19. 선고 2011재나498 판결

주 문

상고를 기각한다.

상고비용은 원고(재심원고)가 부담한다.





이 유





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,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,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,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2012. 4. 26.

재판장	대법관	박일환	<u>박 일 환</u> 
	대법관	신영철	<u>신 영 철</u> 
주심	대법관	민일영	<u>민 일 영</u> 
	대법관	박보영	<u>박 보 영</u> 





정본입니다.

2012. 4. 27.

대법원

법원사무관 손영기



※ 각 법원 민원실에 설치된 사건검색 컴퓨터의 발급번호조회 메뉴를 이용하거나, 담당 재판부에 대한 문의를 통하여 이 문서 하단에 표시된 발급번호를 조회하시면, 문서의 위,변조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